

#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6. 4. 13.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산학협력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사업단 및 센터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6.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관리감독자”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①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산학협력단장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산학협력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산학협력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산학협력단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6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 (관리감독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사업장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

**제10조 (보건관리자)**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계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제 3항과 같다.

###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 (구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 ④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 부서의 장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회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심의·의결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근로자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④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공문서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2. 비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 ②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규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 안전보건교육)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물질 안전보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22조**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 및 시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를 따른다.

**제23조** (기록·보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4조** (안전보건 계획수립 및 실행) 매년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설치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 (작업 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지시·안내·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비상 연락 시스템 구축) ①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산학협력단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9조** (작업환경측정) ①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건강진단) 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해 유해인자별 기준에 따르며, 수시·임시건강진단은 필요시에 실시한다.

- ④ 검진기관·실시주기·검사항목·실시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1조** (유해 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계법령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지급한 보호구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교체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①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5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리·정돈, 조도, 환기, 온도, 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7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 주관하에 신속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요구받은 관련 부서 및 근로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안전 혹은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완·촉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 제7장 위험성 평가

**제39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 별 역할,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1조**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 제8장 보칙

**제42조** (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사람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포상 대상자, 포상 절차 등은 산학협력단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사람

-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변경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 (문서 보존)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타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